

건설기술진흥법 교육·훈련 개정사항 Q & A

□ 개정사항 Q & A

Q1. 진행 중인 차수의 계속교육도 변경되나요?

⇒ 현재 진행 중인 계속교육은 기존규정이 유지되며, 24.1.7. 이후 새로 발생하는 계속교육부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.

Q2. 건설사업관리 계속교육 시간에 변화가 있나요?

⇒ 총 교육시간은 현재와 동일합니다.

- 초·중급 건설사업관리 계속교육 = 35시간(필수계속 3년 21시간, 일반계속 3년 14시간)
- 고·특급 건설사업관리 계속교육 = 70시간(필수계속 3년 21시간, 일반계속 3년 49시간)

구분	기존	개정
초·중급	35h	7h 7h 7h 14h
고·특급	35h 35h	7h 7h 7h 14h 35h

■ : 필수계속교육 ■ : 일반계속교육

Q3. 교육지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?

⇒ 기존과 동일하게 35시간당 적용됩니다.

- 단, 교육지수 적용 대상 교육·훈련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 대행 기관이 영 별표 3에 의해 실시하고 이수한 교육훈련에만 해당됩니다.

※ 교육지수(5점 이내)

교육기간	배 점
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35시간 마다	2
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이외 교육 35시간 마다	1

Q4. 교육지수 적용시기는 언제인가요?

⇒ 35시간 교육·훈련이 완료된 시점(교육수료일)에 적용됩니다.

- (필수) 7시간 + 7시간 + 7시간 + (일반) 14시간 = **합계 35시간이 완료되는 시점**
- 교육지수는 수료일로부터 3년간 유지